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4.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총리령 제 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및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수입식품등”을 각각 “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7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식품·의약품등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숙련도 평가에 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시험분석센터의 명칭·위치(제27조의2제1항 관련)

소속	명칭	위치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별표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3조 관련)

1.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	6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2021년 2월 28일까지
2)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1년 2월 28일까지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식품안전관리 업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40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0명, 연구사 16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식품안전관리 업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5명 (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식품안전관리 업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6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12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① ~ ⑤ (생 략) ⑥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u>수입식품등</u> 유통관리 계획 수립운영 2. ~ 7. (생 략) 8. <u>수입식품등</u> 의 수거 및 검사 계획 수립·관리 9. <u>수입식품등</u> 의 단속계획 수립, 회수 관리, 이물 조사, 행정제 재 등 총괄 10. <u>수입식품등</u> 영업자의 위반 사실 공표 11. <u>수입식품등</u> 의 사건·사고 대응 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법」에 따른 수입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u>수입식품등</u>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 13. 부적합 <u>수입식품등</u> 긴급통 보 운영·관리 14. ~ 16. (생 략)	제10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u>수입식품등</u> (주류는 제외한 다) --- 2. ~ 7. (현행과 같음) 8. <u>수입식품등</u> (주류는 제외한 다)----- 9. <u>수입식품등</u> (주류는 제외한 다)----- ----- 10. <u>수입식품등</u> (주류는 제외한 다) --- 11. <u>수입식품등</u> (주류는 제외한 다)----- -- 12. ----- ----- ----- <u>수입식품등</u> (주류는 제외한다) -- 13. ----- <u>수입식품등</u> (주류는 제외한다) -- 14. ~ 16. (현행과 같음)

제24조(독성평가연구부) ① ~ ⑥ (생 략) ⑦ 첨단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u>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 사능력 관리를 위한 시료 공 급 및 기술 지원</u> 6.·7. (생 략) ⑧ (생 략)	제24조(독성평가연구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4. (현행과 같음) 5. <u>식품·의약품등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 리(숙련도 평가에 한한다)</u> 6.·7.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	--